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73

발의연월일: 2021. 4. 1.

발 의 자:민병덕・이용빈・강득구

이동주 • 이용선 • 민형배

신동근 · 송영길 · 홍성국

김병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달리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공익제보를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공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목적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그 외에 현재 가명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열람권과 정정권 등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재식 별화를 할 수가 없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권 리행사 시점에는 예외적으로 재식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정정권을 제약한 것은 GDPR이 과학적 연구 등 사회적가치가 있는 연구를 급부로 하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등을 제약하려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GDPR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11.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제28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및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7 중 "가명정보는"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이용된 가명정보는"으로 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기록보전 등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심대하게 어려워질 때는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① (생 략) ·제공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 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 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 니 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8조의7(적용범위) 통계작성,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 1. ~ 9. (현행과 같음)
- 10.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11.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 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 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 선하는 경우
- ③ ~ ⑤ (현행과 같음)

지의무 등) ① -----

----. 다만, 제20조, 제21조, 제 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 의4 및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 8까지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 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등을 위하여 이용된 가명정보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u>규정</u>을 적용하지 아니한다.